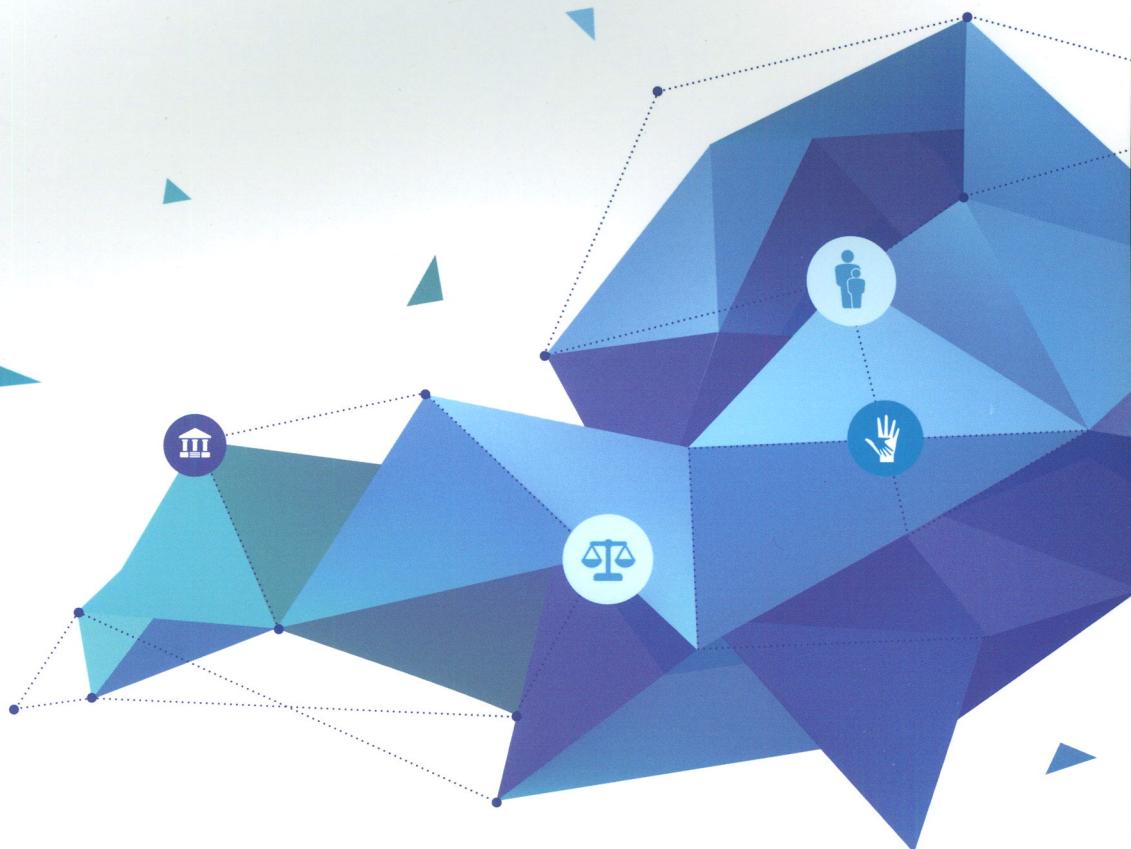


#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

소년사법관련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제



## 발간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송상현

안녕하십니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송상현입니다.

2015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을 발족하고 9차에 걸친 자문회의 결과를 모아 2017년 12월 ‘아동친화 소년사법 제안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연의 업무로 바쁘신 중에 한국 어린이의 권리 증진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12분의 자문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나라 어린이의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며, 모든 부문에서 어린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제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해야 할 과업이 여전히 많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같은 내용의 권고를 거듭 받고 있기도 합니다.

사법 부문도 그 중 하나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법의

제·개정, 어린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절차, 아동 대상 범죄 처벌 강화, 범죄 피해 및 목격 아동의 권리 침해 방지 등을 이행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해 왔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충실향 이행을 위해서는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사법절차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법 결정의 법적 추론도 이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일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일하는 사법 전문가들은 아동권리에 대해 충분히 교육 받아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범죄 피해를 당한 어린이나 범죄를 목격한 어린이의 사생활과 권리 존중을 위해 절차와 규정도 개선해야 합니다.

심각한 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소년사법은 어른과는 다른 어린이의 발달 상태와 특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하는 중입니다. 소년사법은 어린이의 이런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존중받으며, 가정과 학교, 사회로 돌아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의 상황과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은 이러한 취지에서 ‘아동친화 소년사법 제안서’를 마련했습니다. 본 제안서가 소년사법의 모든 과정에서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디딤돌이 되리라 믿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소년사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송상현